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6. 4.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2005. 8. 4)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2006. 2. 8)됨에 따라
- 지난 4월 4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해 오에 따라,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 신설과 의원과 의장단과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일원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제1조>
-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월 1,400,000원)<제3조>
- 국내여비 지급규정을 의원과 의장단과의 구분을 폐지하고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별표1], [별표2]>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
한 조례”를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
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월정수당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
수당은 매월 1,400,000원을 지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시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비고 : 1.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 KTX 운행구간에는 KTX 철도 운임 지급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관련)

(단위 : 미불화)

지급 기준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명 :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u>회기수당</u>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u>회기수당</u>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기수당지급) ①회기중 의원에게 <u>회기수당</u>을 지급한다. ②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 마다 지급하되, <u>회기 중 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u> <u>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u> <u>지급한다.</u> 제7조(회의수당지급기준) 의원에게 <u>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일에 100,000원으로 한다.</u>	제명 :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u>월정수당</u>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u>월정수당</u>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정수당지급)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u>1,400,000원을 지급한다.</u> ②월정수당 지급시기는 제2조제2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제7조 <삭 제>

현행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의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25,000	18,000

비고 :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시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12km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 새마을호 특실, 2등실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르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관련)

(단위 : 불)

구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 · 부의장	1등 정액	실비액	가등급 35	가등급 166	가등급 107	140	170	195
			나등급 35	나등급 120	나등급 78			
			다등급 35	다등급 92	다등급 58			
			라등급 35	라등급 79	라등급 49			
의원	2등 정액	가등급 30	가등급 145	가등급 81	130	155	180	
		나등급 30	나등급 95	나등급 59				
		다등급 30	다등급 70	다등급 44				
		라등급 30	라등급 62	라등급 37				

개정안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비고 : 1.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 새마을호 특실, 2등실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관련)

(단위 : 미불화)

지급 구분	항공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 ·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